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'11년 5월 26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산업피해조사팀장 정승희, 이남용 사무관, 나강운, 이은정 주무관(02-2110-4954) 덤핑조사팀장 김진선, 김주현 사무관, 김지광 주무관(02-2110-4962) 불공정무역조사팀장 윤종욱, 송춘곤 사무관, 한지용 주무관(02-2110-5586)	

무역위원회, 『중국産 도자기질 타일』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3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

- 『중국, 인도産 PET필름』, 『러시아, 미국, 인니, 중국 및 캐나다産 크라프트지』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의견 결정-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: 현정택)는 '11.5.25(수), 제290차 회의를 개최하여, **중국산 도자기질 타일**에 대해 향후 **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하기로** 최종 판정하였다.

아울러 **중국, 인도산 PET필름, 러시아, 미국, 인니, 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**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치의 종료재심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결정하였다.

또한, 무역위원회는 **특허권을 침해한 '척추후굴복원술용 풍선카테터'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명령을, '핵산추출시스템'**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.

□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판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 『중국산 도자기질 타일』에 대한 반덤핑조치 연장 최종 판정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: 현정택)는 (주)대동산업, (주)대보세라믹스, (주)한보요업, 성일요업(주)가 요청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9.14~29.41%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부과하기로 최종판정 하였다.

○ 그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'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.76~29.41%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.

□ 도자기질 타일은 건축물의 외벽,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로 주거용 주택에서는 욕실, 주방, 건물바닥, 아파트 계단 그리고 발코니와 현관입구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.

○ 도자기질 타일 산업은 프레스, 소성로 등 제조설비뿐만 아니라 포장설비 분야까지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며, 국내시장규모는 '09년 기준 6천억원대이다.

□ 그간 반덤핑조치로 국내산업은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재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고 있으나,

○ 중국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무역위는 판단하였다.

□ 무역위는 그간 반덤핑조사를 위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해왔고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, 기획재정부는 1개월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.

2 『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』에 대한 반덤핑조치 재심사 개시의견 결정

□ 무역위원회는 현재 반덤핑조치 중인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(Polyethylene Terephthalate)에 대해 도레이첨단소재(주), 코오롱인더스트리(주), (주)효성, (주)화승인더스트리 등 4개사가 종료재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,

○ 요청인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재심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결정하였다.

□ 재심사대상물품인 PET필름은 주로 LCD 및 PDP의 소재, 스낵포장, 선팅필름, 인쇄제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, 국내시장규모는 '10년 기준으로 약 1조 1천억원 수준이다.

□ 요청인은 '08년 10월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이후 국내산업이 생산, 판매 및 영업이익 등에서 호전되고 있으나

○ '09년 대비 '10년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및 인도의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,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.

□ 무역위원회는 위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며, 기획재정부가 조사개시를 확정하면 향후 6~10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한 뒤, 반덤핑조치 연장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.

3 『러시아, 미국, 인도네시아, 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』에 대한 반덤핑조치 재심사 개시의견 결정

□ 무역위원회는 현재 반덤핑조치 중인 러시아, 미국, 인도네시아, 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(Kraft Paper)에 대해 쌍용제지(주)와 케이지피(주)가 종료재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,

○ 요청인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재심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결정하였다.

□ 재심사대상물품인 크라프트지는 주로 시멘트, 밀가루, 설탕, 비료, 사료, 곡물 등의 포장지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, 국내시장규모는 '10년 기준으로 약 1,500억원 수준이다.

□ 요청인은 '08년 10월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이후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 등에서 호전되고 있으나

○ 반덤핑조치로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감소하였고, 공급국의 생산여력과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,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.

□ 무역위원회는 위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며, 기획재정부가 조사개시를 확정하면 향후 6~10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한 뒤, 반덤핑조치 연장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.

4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등

□ '척추후굴복원술용 풍선카테터' 특허권 침해판정 件

○ 스위스 의료기기업체인 키폰 에스에이알엘이 국내 동종업체인 (주)태연메디칼을 대상으로 **'척추후굴복원술*용 풍선카테터'** 특허권을 침해하여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조사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로 최종 판정하였다.

* 골다공증으로 척추골절시 풍선을 삽입·뼈시멘트를 주입하여 치료하는 시술법

- 피신청업체인 (주)태연메디칼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 및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.

□ '핵산추출시스템' 특허권 침해판정 件

○ 한편, 일본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프레시젼시스템 사이언스 (주)가 자사의 **'핵산추출시스템'*** 특허권을 침해하여,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최종 판정하였다.

* 자성물질을 이용하여 항원 항체 DNA 등을 분석하여 유전자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기기

<붙임1> 『중국산 도자기질 타일』 반덤핑 재심사 최종판정 참고자료
<붙임2> 『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』 반덤핑 재심사 참고자료
<붙임3> 『러시아, 미국, 인니, 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』 반덤핑 재심사 참고자료

<붙임1>

『중국산 도자기질 타일』 반덤핑 재심사 최종판정 참고자료

□ 조사 개요

○ 요청인 : (주)대동산업, (주)대보세라믹스, (주)한보요업, 성일요업(주)
○ 재심사 대상국 : 중국
○ 재심사대상물품 : 도자기질 타일
* 건축물의 외벽,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로 주거용 주택에서는 욕실, 주방, 건물바닥, 아파트 계단 그리고 발코니와 현관입구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

□ 국내수입·수요자

○ (주)삼우세라믹, (주)유창세라믹, (주)이명산업, (주) 우성상재, (주)아벨통상, (주)HS세라믹, (주)유송타일, (주)영화세라믹 외 다수기업

□ 조사 경과

○ '10. 6. 18. : (주)대동산업 등 4개사 재심사 요청
○ '10. 7. 14. : 재심사 조사개시 의견 결정 (제280차 무역위원회)
○ '10. 8. 2. : 재심사 조사개시 공고 (기획재정부)
○ '11. 3. 11. : 공청회 개최 공고
○ '11. 4. 20. : 공청회 개최

□ 최종판정 결과

○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,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정

-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

<붙임2>

『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』 반덤핑 재심사 참고자료

□ 조사 개요

○ 요청인 : 도레이첨단소재(주), 코오롱인더스트리(주), (주)효성, (주)화승인더스트리 등 4개사

○ 조사대상업체(2개국 10개사)

* 중국(푸웨이社, 천진완화社, 산토우社 등 8개社), 인도(가웨어社, 진달社)

○ 조사대상물품(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)

- 정의 : 테레프탈산(Terephthalic Acid)과 에틸렌글라이콜(Ethylene Glychol)과의 축·중합으로 얻어지는 PET 필름 Chip을 건조공정 및 용융과정을 통해 면상으로 압출한 후 냉각, 고화시킨 다음 종횡연신을 하여 일정한 두께와 물성을 부여한 면상필름

- 용도 : 광학용, 스낵포장, 선팅필름, 점착테이프, 인쇄제판 등

* 관세분류 : HSK 3920.62.0000, 3920.69.0000

* 관세율 : WTO협정 양허세율 6.5%, 한-인도CEPA세율 0%(기본관세율 8%)

※ 그 동안의 반덤핑조치 경과

– 원심조치기간 : '08.10.27 ~ '11.10.26(3년)

– 조치내용 : 5.67%~25.32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

□ 국내시장 현황

○ 국내생산자 : 도레이첨단소재(주), 코오롱인더스트리(주), (주)효성, (주)화승인더스트리, 에스케이씨(주)[1] 등 5개사

○ 수입자 : (주)헌터더글라스코리아, (주)재현, 뉴모텍(주) 등 다수

○ 수요자 : (주)제이피앤씨, 대하실업, 하나로 필름, 스탠드팩 등

□ 향후 반덤핑 조사 일정

○ 기획재정부가 **조사개시를 결정할 경우** → 공청회 → 최종판정(6~10개월 이내) → 반덤핑관세부과 연장 여부 등 조치(기획재정부)

1) 원심조사에서 덤핑수입품을 수입한 이유 등으로 국내산업에서 제외된 업체

<붙임3>

『러시아·미국·인도네시아·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』 반덤핑 재심사 참고자료

□ 재심사 개요

○ 요청인 : 쌍용제지(주) 및 케이지피(주)

○ 재심사 대상국 : 러시아, 미국, 인도네시아, 중국 및 캐나다

○ 재심사요청물품 : 크라프트지

- 용도 : 시멘트, 밀가루, 설탕, 비료, 사료, 곡물 등의 지대, 포장지로 주로 사용

○ 국내시장 규모('09년 기준) : 약 1,500억원

□ 국내수요자 및 수입자

○ 수요자 : 주식회사 한화, 주식회사 쌤코, 씨제이 주식회사, 우정상사 등

○ 수입자 : 신일산업㈜, ㈜평화지대, ㈜원림, ㈜마스터페이퍼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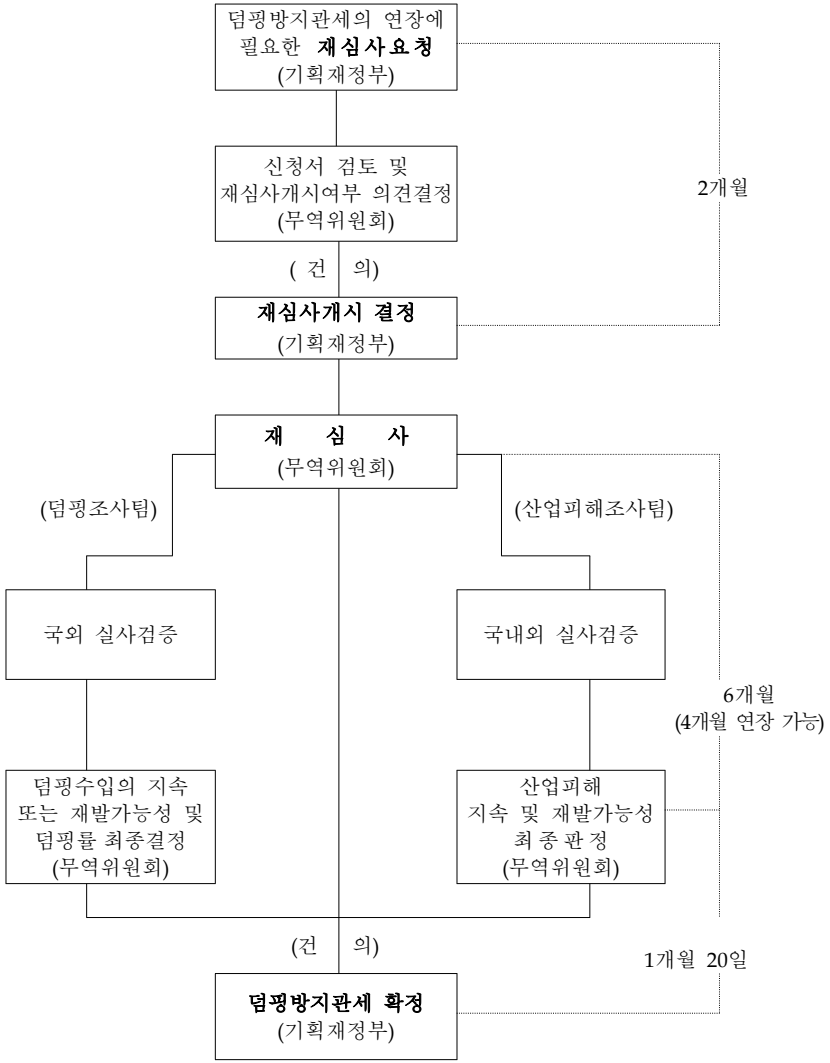
□ 조치 경과 및 향후 계획

○ 러시아, 미국, 인도네시아, 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해 '08.10.27.부터 '11.10.26까지 3년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됨

- 단, 종료재심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기한('11.10.26)이 경과해도 동 부과 조치가 종료되지 않음

○ 향후 기획재정부가 조사개시를 결정하면, 무역위에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연장 여부를 최종판정함

반 덤 핑 재 심 사 절 차 도


덤핑방지관세의 연장에 필요한 재심사요청 (기획재정부)
신청서 검토 및 재심사개시여부 의견결정 (무역위원회)
(건 의)
재심사개시 결정 (기획재정부)
2개월
재 심 사 (무역위원회)
(덤핑조사팀)
(산업피해조사팀)
국외 실사검증
국내외 실사검증
6개월 (4개월 연장 가능)
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및 덤핑률 최종결정 (무역위원회)
산업피해 지속 및 재발가능성 최종판정 (무역위원회)
(건 의)
1개월 20일
덤핑방지관세 확정 (기획재정부)